

☎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33 / 전송(02)796-4487
정책국 국장 최윤배 [6530] 정책팀장 박우민 [6532] 팀원 홍완기 [6533] /rina0602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689-9837호

시행일자 2017. 2. 1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[안내] 환자안전기준 제정고시 관련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기준 제정 고시와 관련하여, 해당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환자안전기준 제정 고시[세부내용-붙임1참조]

-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
-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(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자율보고사항 포함)
-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하는 보건의료활동에 관한 준수 사항
-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[세부내용-붙임2참조]

- 보고자: 보건의료기관의 장, 전담인력, 보건의료인,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
- 보고절차: 자율보고, 검증, 개인식별정보 삭제, 정보수집관리, 정보분석 및 공유, 환자안전연구 등
- 관련근거: 환자안전법 제14조, 제17조,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6조 등

- * 붙임: 1. 환자안전기준 제정 고시 안내
2.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안내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*수신처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